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11. 02.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0월 1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0월 2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10.26)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철)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 소속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안 제3조)
- 휴양시설(콘도, 휴양소),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모범·효행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체육대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선택적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능력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높은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살펴본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1 호
----------	---------

제출연월일 : 2009.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 소속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안 제3조)
- 나. 휴양시설(콘도, 휴양소),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모범·효행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체육대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선택적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09. 6. 25. ~ 7. 15.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및 그 자녀의 출생·입학 축하선물 제공
5. 소속공무원과 함께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
6.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각 국(소)의 주무과장, 기획홍보과장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